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 자격취득 기준의 방향성: 해외 법제화 사례와 국내 자격 제도 비교*

손 보 영 임 지 숙 백 상 은[†]
선문대학교 / 부교수 명지대학교 /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 강사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함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종류에 따라 수련 과정과 자격 요건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에 대한 통일된 이해와 심리상담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법제화가 이루어진 해외 국가자격(미국 심리사, 미국 상담사, 호주 심리사, 유럽 심리사, 영국 심리사, 대만 심리사, 일본 심리사), 국내 국가자격(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과 학회에서 수여하는 민간자격(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심리상담사)을 대상으로, 자격 취득 기준(최소 학위 요건, 수련 내용, 수련 시간, 자격 검정, 자격갱신 및 보수교육)을 비교하고 이에 기반하여 국내 상황을 고려한 심리상담 자격취득 기준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선행요건들로 학위 과정 인증 체계 도입을 통한 교육 과정 표준화,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를 통한 수련기관 내 수련시스템 운영, 전문성 증진을 위한 보수교육 내용의 제정비 및 자격갱신 기간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해외 심리상담 자격 요건, 국내 심리상담 자격 요건

* 본 연구는 2023년도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기관인증TFT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분석 결과에는 2023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수련기관인증TFT에서 진행한 연구 자료 중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구결과 발표 및 출간에 대해 2023년 동학회 운영위원회의 승인(2023년 11월 1일)을 받았음.

† 교신저자 : 백상은,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Tel : 010-2667-9098, E-mail : 100sangeun@hanmail.net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개인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경험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COVID-19의 유행과 장기화는 국민의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쳤으며(보건복지부, 2022),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지진, 태풍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한 재해 등은 직·간접적으로 이를 경험하는 많은 이들에게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 지원 외에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도움을 받는 것에 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져, 이들의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건강 프로그램, 심리평가, 일반심리상담 그리고 부부 및 가족갈등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등 심리학 기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하지만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수요가 더 높아진 데 비해 심리상담과 심리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다. COVID-19의 재유행 등 미래 사회를 대비한 장기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한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었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1).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은 국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인력이 OECD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할 만큼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요원의 OECD 평균 수: 97.1명, 우리나라 평균 수: 16.2명),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인력 확충 계획을 제안하였다. 전 국민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신건강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충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P2030)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함양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 역량을 높이고 충분한 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확보함으로써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은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 활성화를 제안하였고 이를 위해 민간 심리상담 분야의 자격 관리 및 지원 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1). 현재 다양한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사업에 관계된 소관 부처는 무려 22개에 달한다(윤동욱 등, 2020).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듯 bottom-up 방식의 심리상담 관련 정책들은 즉각적으로 현장의 필요에 대응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심리상담 관련 상위법 없이 개별 법률로 심리상담전문가 자격 과정 및 심리상담 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어(김인규, 손요한, 2020), 사업 운영의 주무부서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수행 수준 등의 차이로 일관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사업별로 시행 기관이 달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혼선과 자

원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OECD 전체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문에 응답한 33개국 중 심리상담 관련 법이 제정된 국가는 31개국(93.9%)이며,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과 칠레, 단 2개국에 불과하다(노은빈 등, 2022). 대한민국이 2000년대 이전에 OECD 국가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정신건강에 이바지할 심리상담 관련 정책에 중심이 되는 법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부터 5개의 심리상담 관련 법안 - 심리상담사 법안(최종운 외 9인, 2022),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외 9인, 2022), 심리사 법안(서정숙 외 10인, 2022), 상담사 법안(심상정 외 9인, 2022), 국민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 법안(김민철 외 9인, 2023) - 이 발의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2대 국회에서 최근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법안(이개호 외 12인, 2024)이 발의되어 관련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를 발주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를 수행하였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심리상담 관련 전문 학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해왔다(양난미 등, 2023). 그러나 관련 이해 단체들의 전문성 규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자격 기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국민이 공신력 있는 상담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의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심리적 조력 활동을 통해 내담자가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내담자의 문제 해결 및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전문적인 개입 능력과 내담자 보호를 위한 윤리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이다. 전문성의 중요성은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926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심리상담 전문가의 조건으로 ‘전문적 자질’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전문적 자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교육과 수련, 실제적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추가로, 전문적 자질 이외 조건에는 인간적 자질, 공인된 자격, 사회 및 윤리적 책임이 포함되어 있었다(안수정 등, 2021). 이러한 전문성 함양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심리상담 관련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학회들의 자격 제도 운영 목적에도 반영되어 있다. 한 예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경우 상담심리사 자격 제도의 운영 목적 중 하나로, ‘상담심리사로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담수련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담자의 자질 향상에 기여’를 제안한다. 해당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담심리사로서 요구되는’에 해당하는 내용은 상담심리사의 역할에 부합하는 수련 내용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에 해당하는 내용은 상담심리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추 수 있을 만큼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심리상담 관련 자격취득을 위해 필요한 주요 요

건들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적절한 자격취득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자질을 관리하고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이루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상담 관련 자격 현황을 정리한 기존 연구는 국외 국가 자격과 민간자격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Kim et al., 2022), 국외 주요국가의 심리사 자격 기준을 정리한 연구(노은빈 등, 2022), 국내 상담 관련 민간자격의 현황을 정리한 연구(김인규, 장숙희, 2019; 윤소라, 장진경, 2021; 홍은택 등, 2023)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수련 과정 중 수련생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실무수련 내용에 대한 탐색 대신, 수련 여부를 확인한 데에 그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심리상담 관련 자격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무수련의 내용을 제시 및 비교하고, 학위 과정 내 실무실습과 학위 수여 후 실무수련을 구분하여 표준모형(안)을 제안한 연구가 있다(안성희 등, 2022). 이 연구에서는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미국 심리사 자격을 대상으로 각 자격의 실무수련 내용을 비교하여 국내 심리상담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제안을 위해 법제화 자격 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해당 논문은 미국 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에 심리사(Licensed Psychologist [LP])뿐만 아니라 상담사(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LPC]), 결혼 및 가족치료사(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등 석사학위 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실습수련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수련 과정 외 자격취득을 위한 기준들(예, 자격

검정, 보수교육 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국내 심리상담 관련 법제화를 위해서는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의 직무, 자격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기초 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 관련 법제화가 이뤄진 해외 국가의 자격 제도와 국내 주요 심리상담 관련 자격 제도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최소 학위, 수련 내용, 수련 시간, 자격시험 여부, 자격갱신 기간, 보수교육 여부 등을 비교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적절한 심리상담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부여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방 법

절차

본 연구는 한국상담심리학회 2023년 수련기 관인증TFT 사업의 일환으로 TFT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었다. 2023년 1월부터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조사를 진행할 국가, 자격증 종류, 조사 내용 등을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 검토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회의를 지속해서 진행하였다. 조사를 진행할 국가와 자격증 종류를 선정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국외 자격의 경우, 각 국가 자문가(미국, 호주, 일본, 대만)와의 논의를 통해 번역이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전문 번역가를 통해 번역을 진행하였다. 번역이 완료된 내용은 다시 자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검토 작업은 잘못된 번역 확인, 추가적인 내

용 보완 등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번역 및 검토가 완료된 내용은 조사의 개요(최소 학위, 수련 내용, 수련 시간, 자격시험, 자격갱신, 보수교육)에 맞춰 재구성 및 정리하였다. 국내 자격의 경우, 선행연구 검토와 회의를 통해 자격증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자격증은 자격 관련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의 개요에 맞춰 정리하였다.

국외 자격 선정 기준

해외의 심리상담 관련 법 및 자격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을 조사한 연구(이상민, 2020), 심리서비스 관련 우수 국가로 포함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최근 심리사 자격 기준에 변화가 있었던 일본과 호주에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노은빈 등, 2022) 등이 있다. 또한, 심리상담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된 미국 내에서도 심리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수임 등, 2021; 노은빈 등, 2022; 신윤정, 이지연, 2021)와 상담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나고은 등, 2021; 이상민, 2020)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대륙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륙의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여러 자격증 중에서도 법제화된 자격증을 조사하였다.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유럽에서는 유럽심리사협회와 영국,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일본을 포함하였다.

미국은 심리사(LP)와 같이 박사학위 수준의 학력 기준을 갖추고 취득할 수 있는 면허와 상담사(LPC)와 같이 석사학위 수준의 학력 기준을 갖추고 취득할 수 있는 면허가 모두 존재하며 전반적인 취득 과정은 유사하나 취득 기준이 상이하다. 또한, 미국은 주마다 심리사

혹은 상담사 법령이 따로 존재하며 주별로 자격 관리를 하고 있어 주마다 자격 요건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심리사와 상담사를 모두 조사하였고, 심리사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를 조사하였으며 상담사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를 조사하였다.

호주는 국가 자격인 일반심리학자(General psychologist)와 전문영역 심리학자(Specialist)뿐 아니라 관련 민간자격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ARCAP(Australian Register of Counsellors & Psychotherapists)에서 관리하는 Psychotherapy and Counselling Federation of Australia(PACFA)의 상담사 및 심리치료사(Counsellor and Psychotherapist)와 Australian Counseling Association(ACA)의 상담사(Counsellor)가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일반심리학자와 전문영역 심리학자를 조사하였다.

유럽도 유럽심리치료협회(European Association for Psychotherapy [EAP])에서 수여하는 민간자격인 심리치료사(psychotherapist) 자격이 존재하나, 유럽심리사협회(European Federation of Psychologists' Association [EFPA])에서 시행 및 관리하는 유럽심리사 자격 인증 체계(European Certificate in Psychology [EuroPsy])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EuroPsy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심리사들의 전문성을 상호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격 관리 제도이다. 영국은 유럽심리사협회의 자격 인증 체계를 따라가지 않으며, 유럽의 여러 국가 중에서 자격 관리가 가장 엄격하므로 함께 조사하였다. 영국의 경우, 건강 및 관리 전문직 위원회(Health and Care Professions Council [HCPC])에서 발급하고 영국심리학회(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BPS])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인 공인심리사(Chartered psychologist)와 영국 상담 및 심리치료협회(British

Association for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BACP])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민간자격인 상담사(Counsellor)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으로 규정되고 보호받는 공인심리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대만의 심리사법은 상담심리와 임상심리를 구분하여 각각의 서비스 범위를 구분하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심리사의 하위 분야로 상담심리사와 임상심리사라는 자격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담사가 아닌 심리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중에서도 상담심리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일본은 국가 자격인 공인심리사 외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사, 심리카운슬러, 사이코테라피스트, 심리상담원 등 다양한 관련 민간자격이 있다. 임상심리사의 경우, 재단법인 일본 임상심리사 자격인정협회가 자격을 관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관련 자격은 명확한 자격 기준이 없다. 일본도 국가 자격인 공인심리사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자격증은 미국의 심리사(LP)¹⁾, 미국의 상담사(LPC)²⁾, 호주의 심리사(일반심리학자: General Psychologist, 전문영역심리학자: Specialist)³⁾, 유럽심리사협회 심리사(European Certificate in Psychology), 영국의 공인심리사(Chartered Psychologist)⁴⁾, 대만의

심리사(心理師)⁵⁾, 일본의 공인심리사(公認心理師)⁶⁾ 자격이다.

국내 자격 선정 기준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금까지 제시된 심리상담 관련 법안을 토대로 현행 심리상담 관련 종사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심리상담 인력 통계를 계상한 후 이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22). 심리상담 관련 법안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눈여겨볼 점은 해당 자료에 포함된 심리상담 관련 종사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시한 자료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상담 관련 법과 예산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격종의 종류를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청소년상담사(관련부처: 여성가족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민간자격인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를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한국상담진흥협회에 소속된 학회

1) 미국의 심리사 출처: <https://www.apa.org/>,

<https://www.asppb.net/page/CandHandbook>

2) 미국의 상담사 출처:

<https://www.nbcc.org/exams/ncmhce>,

<https://www.bbs.ca.gov/applicants/lpcc.html>

3) 호주의 심리사 출처:

<https://www.psychologyboard.gov.au/Registration/Provisional.aspx>,

<https://www.psychologyboard.gov.au/Registration/Supervision.aspx>

4) 영국의 공인심리사 출처:

<https://www.bps.org.uk/bps-qualifications>

5) 대만의 심리사 출처:

https://www.moex.gov.tw/main/ExamLaws/wfrmExamLaws.aspx?kind=3&menu_id=320&laws_id=113

6) 일본의 공인심리사 출처: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16049.html>

의 민간자격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사)한국상담진흥협회는 초기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법) 조문에 심리상담 전문가를 포함하기 위해 이익 단체가 필요함을 느끼고 이 필요성을 기반으로 회원 수, 등재학회지 발간 여부, 자격증 발급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회로 구성된 협회(전 한국정신건강상담사협의회)이다. (사)한국상담진흥협회의 단체회원은 연구단체회원, 사업주단체회원, 일반단체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연구단체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민간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운영하는 학회 및 협회 등의 단체,
- 2)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 보유,
- 3) 정기적인 학술지 발간,
- 4) 주기적인 자격 검정 시행,
- 5) 연회비 납부.

이러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사)한국상담진흥협회에 소속된 학회는 한국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자격인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그리고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심리상담사를 추가로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정리하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내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과 1급⁷⁾, 청소년상담사 3급, 2급, 1급⁸⁾이며, 민간자격인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과 1급⁹⁾,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과 1급¹⁰⁾,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¹¹⁾,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3급, 2급, 1급, 감독¹²⁾,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심리상담사 2급, 1급, 전문가, 교육전문가¹³⁾ 자격이다.

결 과

해외 주요국가별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심리상담 자격 요건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해외의 심리상담 관련 국가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호주, 유럽, 영국, 대만, 일본의 심리사 자격 요건을 학위, 수련 내용, 수련 시간, 자격 검정, 자격갱신 및 보수교육의 영역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우선, 조사를 진행한 자격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심리사는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공인 심리학 분야의 대학원 박사학위(심리학박사, 철학박사, 교육학박사 등)를 수료 혹은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의 수련을 거쳐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 행동 및 정신 과정의 연구와 다양한 서비스(상담, 심리치료, 심리검사 그리고 인지, 정서, 행동 영역에서의 정신질환에 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미국

7)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과 1급 출처:

https://kcp.or.kr/user/sub03_8_1.asp

8) 청소년상담사 3급, 2급, 1급 출처:

<https://www.youthcounselor.or.kr:446/new/>

9)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과 1급 출처:

<https://krcpa.or.kr/user/new/index.asp>

10)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과 1급 출처:

<https://counselors.or.kr/>

11)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출처:

https://kcp.or.kr/new/page/sub03_2_1.asp

12)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3급, 2급, 1급, 감독 출처:

http://www.kaccp.org/user/sub05_1.asp

13)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심리상담사 2급, 1급, 전문가, 교육전문가 출처:

https://www.playtherapykorea.or.kr/user/sub03_6.asp

상담사는 심리학 분야의 대학원 석사학위(학교 상담, 정신건강상담, 상담교육 등 상담학 프로그램)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의 수련을 거쳐 면허 또는 인증을 받아, 행동 및 정신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행동, 성격, 발달, 정서, 성격 또는 관계 문제에 대한 평가, 측정, 개입,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호주 심리사는 일반 심리학자와 전문영역 심리학자로 구분된다. 일반심리학자는 4년제 심리학과 졸업 후 Australian Psychology Accreditation Council(APAC)이 공인하는 대학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 전문영역 심리학자(예. 임상신경심리학, 임상심리학, 지역사회심리학, 교육 및 발달심리학, 법의학심리학, 건강심리학, 조직심리학, 스포츠 및 운동심리학 등)는 일반심리학자 취득 후 일반심리학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레지스트라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특정 전문영역에 등

록된 수퍼바이저에게 수련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참고로, 기존에는 전문영역에 상담심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임상심리만 포함하고 있으며, 임상심리 영역에서 상담심리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유럽심리사협회의 심리사는 기본 자격(basic)과 고급 자격(specialization)으로 구분된다. 기본 자격은 전문 분야의 자격을 갖추기 전에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표준적인 자격을 의미한다. 고급 자격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전문적 지위를 가지고 독립적인 실무가 가능한 자격을 의미한다. 고급 자격은 심리치료, 작업 및 조직심리학의 두 영역에 해당한다. 고급 자격은 기본 자격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년간 심리사로 활동한 후에 신청 가능하며, 심리사 활동에는 대학원 실습, 수퍼비전, 연구, 개인치료가 포함된다. 영국의 공인심리사는 심리학, 심리치료이론, 연구를 임상 실무에 응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를 의미

표 1. 해외 주요국가별 심리상담 관련 국가 자격의 요건

국가별 공인자격	최소 학위	수련시간(기간)	자격시험	보수교육	자격갱신
미국 심리사	박사 취득	3000 ~ 3500시간	○	○	2 ~ 3년
미국 상담사	석사 취득	3000시간	○	○	2년
호주 일반심리학자	학사 취득 + 석사 취득	44 ~ 88주	○ / ×	○	1년
호주 전문심리학자	학사 취득 + 석사 취득	1500 ~ 3000시간	×	○	1년
유럽 심리사	학사 취득 + 석사 취득	2년	×	○	7년
영국 심리사	학사 취득 / 박사 취득	450시간	×	○	2년
대만 심리사	석사 취득	1년	○	○	6년
일본 심리사	학사 취득 / 학사 취득 + 석사 취득	2년 / 270시간	○	×	×

주. 대만 심리사의 경우, 자격시험 전 실습을 기준으로 정리함.

주. 일본 심리사의 경우, 자격시험 전 실습을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학사 과정 중 80시간 실습은 표에서 제외함.

하며, 대학원 과정과 상담심리학 자격 과정 (Qualification in Counselling Psychology [QCoP])을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대만의 심리사, 그중에서도 상담심리사는 인지, 정서, 행동적 어려움이나 사회적응, 발달, 신경증과 관련된 비임상적 문제에 대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는 전문가를 의미하며, 대만 심리사법 아래 임상심리사와 구분된 자격으로 인정된다. 고선부(考選部/Ministry of Examination)에서 주관,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 일본 공인심리사(公認心理師)는 보건의료, 복지, 교육 및 그 외 분야에서 심리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 지원(상담, 지도,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하며, 문부과학성(교육부) 및 후생노동성(고용복지부)에서 주관 및 발급한다. 표 1에 조사를 진행한 국가별 공인자격의 요건을 정리하였다.

최소 학위

조사 국가 대부분 최소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호주, 유럽, 대만, 일본 심리사의 경우 최소 학위로 석사학위를 요구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담사도 최소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반면, 미국 심리사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최소 학위로 박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호주 심리사는 최소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나,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1년 석사학위 과정과 논문 작성이 필요한 2년 석사과정으로 구분하고, 추가로 석·박사통합과 박사학위의 학력 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호주 심리사는 일반심리학자 및 전문영역 심리학자의 자격취득 경로가 학력 조건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며(① 학

부 4년 졸업 후 1년 석사학위, ② 학부 4년 졸업 후 2년 석사학위, ③ 학부 4년 졸업 후 석·박사통합, ④ 학부 4년 졸업 후 박사학위), 이에 따라 수련 기간 및 자격시험 여부가 달라진다. 영국 심리사는 Doctor of Psychology (Psy.D.) 대학원 과정 혹은 영국심리학회의 상담심리학 자격 과정(QCoP)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박사학위를 최소 학위로 요구하지만, 상담심리학 자격 과정의 경우 학사학위를 최소 학위로 요구한다. 일본 심리사는 석사학위 대신, 학사학위 취득 후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시설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수련 내용

해외 심리상담 관련 국가 자격의 수련 내용은 심리상담, 심리평가, 슈퍼비전, 교육, 기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련 내용을 표 2에 정리하였다.

심리상담 영역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한 모든 국가에서 개인상담을 수련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일부 국가에서 커플, 가족, 집단 상담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상담과 관련된 상담 의뢰, 전반적인 예방 및 위기관리 계획 등을 제시하는 국가도 있었다.

심리평가는 일부 국가에서만 수련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및 뉴욕주, 호주 전문영역 심리학자, 대만, 일본의 심리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담사 자격증의 수련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미국 심리사의 심리평가는 심리검사 시행과 해석을 통한 평가과정이지만, 미국 상담사의 심리평가는 상담 초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초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표 2. 해외 주요국가별 심리상담 관련 국가 자격의 수련 내용

국가별 공인자격	심리상담	심리평가	수퍼비전	자격취득 필수 교육	기타
미국 캘리포니아 심리사	접수면접, 개인상담, 커플 및 가족 상담, 집단상담, 상담의뢰, 위기관리	심리평가	수퍼비전, 수퍼비전의 수퍼비전, 수퍼비전 사례 발표	다문화 역량 프로그램	아웃리치 지원활동 및 컨설팅 활동, 실습생 및 사회 복지 인턴 교육, 멘토 또는 동료 교육자 교육 등
미국 뉴욕 심리사	심리상담, 정신분석, 심리치료, 부부 또는 가족 치료	심리평가	수퍼비전	법과 윤리, 약학 등 다학제 교육	
미국 캘리포니아 상담사	개인, 집단, 커플, 가족 상담	심리검사 해석, 임상보고서 작성	수퍼비전		내담자 중심 권의 보호 활동 등
호주 일반심리학자	개인상담		수퍼비전	기본적인 상담 기술 훈련, 수퍼바이저 실무 참관	
호주 전문심리학자	개입, 예방, 관리 계획	심리평가	수퍼비전		컨설팅
유럽 심리사	상담		수퍼비전		
영국 심리사	개인, 아동, 커플, 가족, 집단 또는 조직 상담		수퍼비전		개인 치료, 에세이, 보고서, 연구 등
대만 심리사	개인상담, 결혼 또는 가족 상담, 집단상담	심리평가	수퍼비전	정신건강 교육 및 예방	
일본 심리사	상담, 지원 계획	심리검사	수퍼비전	내담자에 대한 지식, 심리검사 및 면접에 대한 이해, 직업적 윤리와 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 지역 협업 관련 기술	다양한 직종 협업 및 지역 협업

주. 상기 표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해당 요건을 수련 내용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만 포함된 것으로, 실제 개별 수련기관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 영국 심리사의 경우, 상담심리학 자격 과정(QCoP)의 수련 내용을 정리함.

주. 일본 심리사의 경우, 석사학위 과정 중 수련 내용을 정리함.

평가 혹은 접수면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퍼비전은 조사를 진행한 모든 국가에서 수련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심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수퍼비전의 수퍼비전도 포함하고 있었다. 수퍼비전은 수련생이 수퍼바이저로서 상담 개입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개인상담에 관한 수퍼비전을 받는 과정을 의미하며, 수퍼비전의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로서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퍼비전에 관한 수퍼비전을 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교육은 조사를 진행한 국가 중 일부 국가에서 내담자에 대한 지식, 심리검사 및 면접에 대한 이해, 직업적 윤리와 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 약학 등 다학제 교육을 수련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심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다문화 역량 프로그램을 수련 내용으로 제시하고, 일본은 의사소통 기술, 지역 협업에 관한 기술을 수련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기타는 심리상담, 심리평가, 수퍼비전, 교육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수련 내용에 해당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자격증에서 아웃리치 지원활동 및 컨설팅 활동, 실습생 및 사회복지 인턴 교육, 멘토 또는 동료 교육자 교육 등을, 호주 심리사 자격증에서 컨설팅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호주에서는 심리사의 자문가로서의 역할에 중요성을 두고 이와 관련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수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련시간

해외 심리상담 관련 국가 자격은 전체 수련 내용에 대한 총 수련시간을 제시하며 수련시

간은 국가별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심리사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 3,000시간, 뉴욕주에서는 총 3,500시간을 요구한다. 수련의 시작 시기가 박사학위 취득 혹은 수료 이후지만, 박사학위 과정 중 수련 시간도 인정된다. 단, 전체 수련시간의 최대 1/2까지 인정된다. 예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 3,000시간 중 1,500시간은 박사학위 과정 내 수련 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며, 나머지 최소 1,500시간은 박사학위 취득(수료) 후 수련이어야 한다. 미국 상담사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총 3,000시간을 요구한다. 수퍼바이저 관리 하 104주를 포함한 3,000시간의 임상 및 비임상 경력이어야 하며, 임상 경력(상담)은 최소 1,750시간, 비임상 경력(행정, 워크숍 등)은 최대 1,250시간이어야 한다.

호주 심리사의 경우, 일반심리학자는 4년제 심리학과 졸업 후 대학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 과정 내 심리학 실습이 포함되어 있다. 심리학 실습 총 시간은 학위별로 상이하다① 학부 4년 졸업 후 1년 석사학위: 1,400시간 (이후 추가적인 1,540시간 인턴십 필요), ② 학부 4년 졸업 후 2년 석사학위: 88주, ③ 학부 4년 졸업 후 석·박사통합: 66주, ④ 학부 4년 졸업 후 박사학위: 44주). 전문영역 심리학자는 일반심리학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레지스트라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전문영역에 등록된 수퍼바이저에게 수련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레지스트라 프로그램의 총 수련시간도 학위별로 상이하다① 학부 4년 졸업 후 1년 석사학위: 3,000시간 혹은 2,250시간, ② 학부 4년 졸업 후 2년 석사학위: 3,000시간, ③ 학부 4년 졸업 후 석·박사통합: 2,250시간, ④ 학부 4년 졸업 후 박사학위: 1,500시간). 단, 학부 4년 졸업 후 1년

석사과정을 수료한 수련생들이 전문영역 심리학자 취득을 원하는 경우, 2년 석사 혹은 석박사통합 과정을 다시 수료한 후, 레지스트라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

유럽 심리사의 경우, 기본 자격취득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 아래 최소 1년 동안 1,500시간의 슈퍼비전이 동반된 수련을 해야 하며, 심리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고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동안 3,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해야 한다. 영국 심리사의 경우, 대학원 과정과 상담심리학 자격 과정(QCoP) 모두 450시간의 수련시간을 요구한다.

대만 심리사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1,500시간 이상의 실습이 필요하다. 일본 심리사의 경우, 자격시험 전 학사학위 중 실습과 석사학위 중 실습이 모두 필요하며, 각 학위과정에서의 수련시간이 상이하다. 학사학위 중에는 80시간 이상, 석사학위 중에는 270시간 이상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석사학위 대신, 문부과학성 및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시설에서 실무 경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학사학위 중 80시간 이상 실습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지정 시설에서 2년 이상의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자격 검정

자격 검정의 절차를 살펴보면, 자격취득을 위해 자격시험과 수련 내용 평가를 함께 하는 경우와 별도 자격시험 없이 교육이수, 수련내용 등의 평가를 통해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격시험을 보는 경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호주(학부 4년 졸업 후 1년 석사학위 수련생), 대만 그리고 일본 심리사가 해당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담사도 해당

한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는 호주의 심리사(학부 4년 졸업 후 2년 석사학위 이상의 수련생)와 유럽의 심리사, 영국의 심리사가 해당한다. 필수 학위와 수련 요건을 충족한 후 자격증 주관 기관에서 일련의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평가를 받기 위해 증명자료(진술서, 슈퍼바이저의 평가, 전문성 증명을 위한 서류, 학술 및 연구 능력 평가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고 자격 검정 절차를 진행한다. 자격시험을 진행하는 국가별 공인자격의 종류와 구체적인 자격시험 과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자격갱신 및 보수교육

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자격을 유지하고 전문성 및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갱신 기간을 보면 가장 짧은 갱신 기간은 1년이며 가장 긴 갱신 기간은 7년으로 국가별 편차가 있었다. 보수교육의 내용은 실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중점을 둔,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과 윤리에 대한 민감성 향상에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에 국가별 국가 자격의 자격갱신 기간, 보수교육 내용 및 의무 교육 시간을 정리하였다.

국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국외 자격과의 비교를 위해 국내 자격증도 자격취득을 위한 학위, 수련내용, 수련시간, 자격검정, 자격 갱신 및 보수교육의 영역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국내 자격은 자격증의 등급이 구분된 경우 자격급별로 수련시간 및 수련

표 3. 해외 주요국가별 심리상담 관련 국가 자격의 자격갱신 및 보수교육

국가별 자격	자격갱신	보수교육	
		시간	내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2년	36시간	CE 활동 (다양한 주제에 관한 서적이거나 저널, 온라인 강좌를 통한 교육, 오프라인 워크숍 참여 등), 4시간 법과 윤리 필수 포함
미국 뉴욕주 심리사	3년	36시간	CE 활동 (다양한 주제에 관한 서적이거나 저널, 온라인 강좌를 통한 교육, 오프라인 워크숍 참여 등), 3시간 법과 윤리 필수 포함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담사	2년	36시간	CE 활동 (서적이거나 저널을 통한 교육, 비디오 기반 강좌 혹은 웹비너 등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컨퍼런스 참여 등) 6시간 법과 윤리, 6시간 자살위기 개입 필수 포함
호주 심리사	1년	80시간	CPD 활동 (레지스트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미나, 새로운 기법 혹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훈련 워크숍, 개인 및 동료 슈퍼비전, 스터디 모임, 개인 스터디(전문 심리학 학술지 저널 구독) 등이며, 슈퍼바이저와의 논의를 통해 각 수련생을 위한 CPD를 설계하여 수행 가능)
유럽 심리사	7년	매년 40시간	CPD 활동 (워크숍 참여, 직장에서의 실습을 통한 새로운 기법의 개발, 동료 슈퍼비전 참석, 컨퍼런스 참여, 연구, 서적 집필 등)
영국 심리사	2년	-	CPD 활동은 크게 업무 기반 학습(사례연구, 성찰적 실습, 동료와의 논의, 슈퍼비전 등), 전문적인 활동(강의 또는 교육, 멘토링, 컨퍼런스에서의 발표, 공인 강좌 기획 등), 교육(컨퍼런스 참여, 세미나 참여, 논문 작성, 온라인 강좌 이수 등), 자기주도 학습(논문이나 서적 읽기, 진행 과정 기록 등), 기타(관련 공공서비스 또는 자원 봉사 활동)로 구분
대만 심리사	6년	-	-
일본 심리사	-	-	-

주. CE는 Continuing Education의 약자, CPD는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의 약자임.

주. 호주의 경우, 2년 석사학위 기준으로 수련시간을 정리함. 석박사통합은 60시간, 박사학위는 40시간임.

주. 호주의 경우, 7년의 갱신 기간 중 최소 4년 동안 전문적인 실무 경험과 함께 CPD 활동이 요구됨. 매년 최소 40시간(총 160시간)의 CPD 활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함. 권장되는 CPD 활동 시간은 매년 80시간임.

주. 영국의 경우, CPD 활동의 최소 시간을 제시하기보다 충족해야하는 5가지 기준을 제시함. 1) 지속적이면서 최신 활동, 2)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활동, 3) 심리서비스의 질(quality)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4) 서비스 이용자(즉, 내담자)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 5) 활동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시.

내용이 상이하어, 수련시간 및 수련내용은 2급 자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최소 학위

조사한 국내 자격 대부분 자격취득을 위한 최소 학력으로 학사학위 혹은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 자격의 등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최소 석사학위 취득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를 제외한 국내 관련 자격은 자격의 등급이 구분되어 있으며 등급에 따른 학위 조건이 상이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자격증은 2급과 1급으로 구분되며,

표 4. 국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요건

구분	기관 혹은 학회별 자격	최소 학위	수련시간(기간)	자격 시험	보수 교육	자격 갱신
국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1급	학사 취득 / 석사 취득	1년 1,000시간 / 3년 3,000시간	×	○	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3급/2급/1급	고등 졸업 / 학사 취득 / 석사 취득	-	○	△	-
민간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1급	관련 학사 취득 / 관련 석사 취득	1년 / 3~4년	○	○	1년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1급	학사 과정 / 석사 취득	1년 180시간 / 3~4년 720시간	○	○	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석사 취득	3년 3,000시간	○	○	1년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3급/2급/1급/감독	학사 취득 (3, 2) / 석사 취득 (1, 감독)	1년 / 1년 / 3년 / 3년	○ / ×	○	5년 / 5년 / 1년 / 1년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심리상담사 2급/1급/전문가/교육전문가	석사 취득 (2, 1, 전문가) / 박사 취득 (교육전문가)	요건 충족	○	×	×

주.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을 기준으로 정리함. ○는 필기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는 필기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임.

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별도의 수련기간 없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연수 과정을 거쳐 최종 자격을 취득함.

주.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의 경우, 3급, 2급, 1급은 자격시험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보지만, 감독은 면접시험만 봄.

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위한 학력 조건은 상담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 상담 관련 전공 석사학위 과정(석사학위 취득 포함), 비상담전공 학사학위 취득이다.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위한 학력 조건은 상담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 비상담전공 석사 후 상담 관련 전공 박사학위 입학이다. 이렇게 자격급별 학위를 구분하고 있으나, 상담심리사 2급 취득자도 1급 자격취득이 가능하므로 자격에 대한 최소 학위는 학사학위로 볼 수 있다.

수련 내용

국내 자격의 수련 내용도 심리상담, 심리평가, 슈퍼비전, 교육, 기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련 내용을 표 5에 정리하였다. 수련 내용 조사 시, 국내 자격의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2급 자격증을 기준으로 정리하였고,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별도의 수련 과정이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를 진행한 대부분의 자격에서 수련 내용으로 개인상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자격에서는 접수면접과 집단상담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심리평가는 놀이심리상담사를 제외한 모든 자격에서 수련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슈퍼비전 영역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한 대부분의 국내 자격이 개인상담과 심리평가 슈퍼비전을 수련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는 개인상담과 심리평가 슈퍼비전뿐 아니라 집단상담 실시에 대한 슈퍼비전도 포함하고 있었다. 교육은 학술대회(혹은 학술모임)와 공개사례발표 참관(혹은 상담사례 연구활동)으로 구분되며, 조사를 진행한 대부분의 국내 자격이 학술대회 참석과 공개사례발표 참관을 수련 내용으로 포함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타는 집단상담 참여, 교육분석과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 연구 논문과 대외협력 지원사업을 수련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련시간

수련시간 조사 시, 국내 자격의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2급 자격증을 기준으로 정리하였고,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 등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석사취득자의 수련시간을 정리하였다.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별도의 수련 과정이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자격은 자격급별로 수련시간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2급 자격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내 자격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수련시간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격의 등급이 구분되지 않은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 총 수련시간이 학위별로 상이하였다. 석사학위 취득 수련생은 3년 이상 3,000시간 이상이고, 박사학위 과정 수련생은 2년 이상 2,000시간 이상이며, 박사학위 취득 수련생은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이었다. 또한, 해외 자격처럼 전체 수련에 대한 총 수련시간을 제시하기보다 개별 수련 내용에 관한 최소수련 요건을 회기수, 사례수, 혹은 시간으로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수련 내용과 함께 개별 수련 내용에 관한 최소 수련시간을 표 5에 제시하였다.

자격 검정

대부분의 국내 자격의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수련내용평가(수련내용평가는 각 자격마다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표 5. 국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수련 내용

수련 내용	국가			민간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 전문가	전문상담사 2급 (한국기독교)	놀이심리 상담사 2급	
접수면접	-	20회	20시간	-	5시간	-	
심리 상담	150시간	50회기	55시간	300시간	20회기	20회기	
집단상담	-	-	25시간	-	-	-	
정신사회재활	150시간	-	-	-	-	-	
심리 평가	330시간	10사례	-	300시간	-	-	
해석상담	-	10사례	5사례	-	20회기	-	
수퍼 비전	200시간	8회	16시간	-	7시간	10회	
집단상담	-	-	5시간	-	-	-	
심리평가	-	5사례	4시간	50시간	3시간	-	
공개사례발표	-	2사례	-	2회(4시간)	-	-	
교육	20시간	2회	1회	30시간	1회	-	
공개사례발표참관	-	8회	10시간	10시간	3회	4회	
집단상담참여	-	30시간	30시간	-	15시간	-	
교육분석	-	-	10시간	150시간	10시간	-	
기타	-	-	-	1편	-	-	
대외 협력 지원 사업	-	-	-	30시간	-	-	

주. 상기 표의 내용은 명시적으로 해당 요건을 수련 내용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만 포함된 것으로, 실제 개별 수련기관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경우, 실습은 심리평가 330시간, 개인/집단 심리치료 150시간, 정신사회재활 150시간, 개별사례분석 200시간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20시간의 학술활동이 있음.

주. 상담심리사의 경우, 개인상담은 5사례 포함 총 50회기 이상이어야 함. 상담사례연구활동(공개사례발표 참관)은 학회 2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이상이어야 함. 임의로 대략 학술대회 2회, 공개사례발표 참관 8회로 구분함.

주.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의 경우, 개인상담은 5회기 이상 지속된 5사례를 포함하고, 심리검사를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를 포함하여 총 60시간이어야 함. 임의로 대략 개인상담 55시간, 해석상담 5사례로 구분함.

주.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 심리평가 300시간에는 종합평가 30례 이상 포함되어야 함. 1례는 3회기 이상 심리치료가 실시된 경우를 의미함. 또한, 심리치료 실시 준비 및 지도감독 받기 준비 60시간이 요구됨.

주.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의 경우, 개인상담 5사례와 심리검사 개인상담(해석상담) 5사례를 포함하여 총 40회기 이상의 상담 경력이 필요함. 개인상담과 심리검사 개인상담의 수련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임의로 대략 개인상담 20회기, 심리검사 개인상담 20회기로 구분함. 또한, 개인상담에 대한 40시간 이상의 집단수퍼비전이 요구됨.

자격심사, 수련요건심사, 수련심사 등)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격검정 과정에 차이가 있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없이 수련내용평가만 진행되는 반면,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응시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심사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진행하지만 수련내용에 대한 별도의 평가과정을 갖지 않는다. 다만 면접 합격 후 자격연수 과정을 거쳐 최종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들 자격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자격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수련내용평가를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의 경우, 3급, 2급, 그리고 1급의 경우 필기시험, 면접시험, 수련내용평가를 모두 시행하는 반면, 감독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과 수련내용평가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기시험을 진행하는 국내 자격의 종류와 구체적인 필기시험 과목은 부록 2

에 제시하였다.

자격 갱신 및 보수교육

국내 자격 대부분 보수교육이 있지만, 자격 갱신 조건이 학술행사 혹은 교육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과 상담심리사 2급 회원은 자격 유지를 위해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제반 수련활동에 연 2회 이상 참여하고, 학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수강해야 한다. 그 외 다른 국내 자격 또한 학회 학술행사 혹은 윤리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청소년 관련 단체 종사자에게만 보수교육이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놀이심리상담사의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 표 6에 국내 자격의 자격 갱신 기간, 보수교육 내용 및 의무 교육

표 6. 국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자격갱신 및 보수교육

구분	자격종	자격 갱신	보수교육		
			시간	내용	
국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년	12시간	법령 2시간, 윤리 2시간 포함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1년	8시간	이러닝 및 집합 교육	
민간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년	-	학회 학술행사 1년마다 2회, 윤리 교육 2년마다 1회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년	-	학회 학술행사 1회, 윤리 교육 참석 1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1년	10시간	윤리 2시간 포함	
	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	3급, 2급	5년	25시간	교육 행사, 윤리 교육(1급과 감독은 수퍼바이저 교육)
	1급	1년	9시간		
	전문상담사	감독	1년	6시간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심리상담사	-	-	-	

시간을 정리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심리상담전문가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적절한 학위 수준과 수련 기준에 대한 제안을 위해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법제화되어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해외 주요국가의 자격과 국내 주요 심리상담 관련 자격의 운영 현황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조사 내용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수련 과정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해외 심리상담 법제화 국가의 자격과 국내 심리상담 자격의 운영 차이로 인해 해외와 국내 자격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나, 본 장에서는 심리상담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의 세부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논의를 위해 국내외 구별 없이 심리상담 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내용을 세부 항목별로 정리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의 요약과 이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심리상담 관련 공인 자격 제도를 갖춘 해외 자격의 경우 국가별로 자격 부여를 위한 학위, 수련 시간, 수련 과정, 시험의 형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최소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과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요구하며 수련의 질적인 내용과 자격시험을 위한 평가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심리상담 관련 자격의 경우 국가 발급 자격과 민간 학회 발급 자격 간에는 자격 제도 운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석사학위에 준하는 자격과 수련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해외 자격 제도와 유사하였다.

먼저 학위에 관해서 살펴보면, 해외 국가의 경우 미국 심리사(LP)의 박사학위와 일본 公認心理師(공인심리사)의 학사학위 자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서 인증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석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자격증 급별이 존재하며 자격증 급별에 따라 서로 다른 학위 기준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즉, 해외의 경우 자격취득을 위한 학위 자격이 최소 석사학위 이상으로 일원화되어 있지만, 국내의 경우 석사학위 과정 이상에 준하는 자격을 기본으로 명시하되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수여하는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사학위에 심리상담 관련 실무자의 경력이 있을 시 자격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될 수 있으나, 상담 실습 및 수련에 기반하지 않는 국내 심리상담 관련 학부 교육 과정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상담 훈련과 자격이 없는 이들의 상담 업무 수행을 용인한다는 모순을 보여주는 한계를 가진다. 심리상담 전문가의 자격을 단순히 어떤 학과 출신인지 혹은 어느 수준의 학위를 취득했는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다만, 심리상담 전문가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만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실습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내에서 심리상담 전문가 교육을 이수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심리상담 자격 부여를 위한 학위 조건을 학위의 수준, 출신 학과명으로 분류하는 현재의 기준을 보완하여 학위 과정 인증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필요 교과목과 기본 실습수

업 등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의 경우 교육 과정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심리상담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출신 학과의 배경보다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의 졸업 여부가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데 더 중요하다(신윤정, 이지연, 2021). 이렇게 인증된 심리상담 교육 혹은 수련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했음은 심리상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담 역량을 습득하였음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교육을 받고자 하는 예비 심리상담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질적으로 관리되는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 과정 표준화 및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바 있다(김인규, 2018; 김인규 등, 2013; 신윤정, 이지연, 2021).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는 교과목 지정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교과목 구성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상담 수행 역량을 갖추었는지 등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론 위주의 대단위 강좌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학부 과정 운영 여건에서 학생들이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에서 조사된 해외 자격증의 경우 대부분 석사 이상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며, 호주도 원래 4년제 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후 2년 이상의 인턴십 이수로 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러한 기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고려하여(AHPRA, 2021) 2022년 7월부터 현재의 기준으로 자격 기준을 조정하

바 있다. 해외 조사국 중 유일하게 학사학위자의 자격취득 진입 경로를 허용한 일본도 학사 졸업 후 2년간 지정된 기관에서 실습 근무가 필요하다. 이마저도 현재 학사학위만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증기관이 부재하여 현재까지 일본에서 인준받은 약 40,000명의 심리사는 모두 석사학위 이상을 이수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학사학위 수준의 자격취득은 비현실적임을 알 수 있다(Suzuki, 2022). 본 연구에서 조사된 국내 자격증도 석사학위 과정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사학위자의 경우 비자격자의 실무 경험이라는 모순이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실무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사학위만으로 상담 수행 역량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움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국내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취득을 위한 학위의 기준으로 인증된 심리상담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서의 석사학위 이상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다만 교육 과정 표준화와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는 많은 사회적 비용과 수고가 발생하며 그런데도 이를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상담 관련 학회와 실무자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특정 학회나 기관의 노력으로 추진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상담제도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심리상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과정을 표준화하고, 관련 교육기관의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심리상담자의 교육권 보호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는 이들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수련 시간에 관해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해외 사례의 경우 국가별

로 차이가 있다. 박사학위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 심리사(LP)의 경우 박사과정 수료 후 약 3,000시간의 수련이 필요하며 석사학위를 기준으로 하는 상담사(LPC)의 경우 석사학위 졸업 후 약 3,000시간의 수련이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학부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원 과정 내 수련 실습이 포함되어 진학한 대학원 과정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수련 시간이 달라지는 점이 특징적이다. 유럽, 영국, 대만 등의 경우 석사학위 이후 수련 기간을 갖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내 자격증의 경우 수련 시점은 수련자의 학위, 경력에 따라 달라지나 민간 자격증의 경우 통상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는 학회나 기관에 가입 승인이 된 이후 활동 내용이 수련으로 인정된다. 수련 시간 혹은 기간도 학위 과정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및 성장을 조력할 수 있는 상담자를 양성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국내외 자격증의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수련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수련 내용과 수련이 이뤄지는 과정은 법제화된 국가와 국내의 경우 차이가 있었다. 국내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수련 내용의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고 이를 수련자가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법제화된 국가에서는 학위 과정 내 실습과 수련을 별개의 과정으로 구분하고 인증된 수련기관 내 수련감독자의 관리 감독하에 상담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때 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는 수련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이다. 이러한 해외 제도는 상담수련생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수련내

용을 구성하고 슈퍼바이저를 섭외하는 부담을 줄여줘 상담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심리상담 관련 역량을 총체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얻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명의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를 지속해서 지도하는 과정을 통해 전인적으로 슈퍼바이저의 성장을 조력할 수 있고 심리상담 전문인력의 상담 시장 진입에 있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상심리전문가를 제외한 국내 심리상담 관련 자격의 수련생은 수련실습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수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 학위 과정 내 1,000시간, 학위 과정 외 2,000시간(총 3,000시간)의 수련을 받는데, 이때 학위 과정 외 2,000시간의 수련은 보통 병원 등의 기관에 상주하며 교육 및 수련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임상심리전문가의 수련 활동이 기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수련생은 별도의 개인 부담 없이 안정적인 환경 내에서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해외 자격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외 심리상담 관련 자격의 경우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 자격 양성 및 관련 서비스 운영에 관한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련 실습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대부분을 수련생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심리상담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해 큰 비용 발생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심리상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법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상담수련 시스템에 대한 기준 즉, 비용, 수련 기간, 수련 기관 및 수련생 역할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

외 사례와 같이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건강 보험 혜택 등 사회적 보장이 마련되어 수련생이 수련기관 내 사업 등에 참여하여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상담수련 제도가 수련생뿐 아니라 수련기관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 전제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속히 심리상담 법제화가 이뤄져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 운영이 수련 기관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국내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취득을 위해 석사학위 과정 내에서 이뤄지는 수련과 별개로 인증된 외부 수련 기관에서의 1년, 2,000시간의 수련 시간을 제안한다. 해외 자격의 수련 내용의 기준을 보면 인증된 수련기관에서의 정해진 기간 내 수련을 강조하며, 다양한 수련 내용, 수련 프로그램 운용 인력 기준, 수련생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련기관 운영과 관련한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된 결과 안에서 수련기관 인증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적어도 현재처럼 개인이 개인상담 몇 회, 슈퍼비전 몇 회 등 산술적으로 수련 내용을 구성하지 않고 1년, 2,000시간이라는 수련기간 동안 다양한 심리상담 영역의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역량들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자격 부여를 위한 검정 과정을 살펴보면, 수련내용평가만 진행되는 경우와 수련내용평가 외 별도의 자격시험을 보는 경우로 크게 나뉘볼 수 있었다. 영국, 호주의 석사 2년 이상 대학원 과정,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자격시험 없이 수련내용평가만으로 심리사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국내 자격증

과 미국, 대만, 일본의 경우 자격시험과 수련 내용평가를 함께 진행하였다. 법제화가 이뤄진 국가들의 경우 해당 시험의 범위는 특정 교과목을 지정하기보다 심리상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포괄적인 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학사와 석사를 기준으로 시험과목이 다르게 제시되는데 석사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역 중심으로, 학사의 경우 교과목 중심으로 자격시험이 운영되었다. 국내 관련 자격의 경우 평균 5~7개의 교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필기시험의 경우 자격증 발급 학회의 기준에 따라 과목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으나 심리상담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며, 면접의 경우 심리상담 수행을 위한 능력, 지식, 태도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규정에 따르면(상담심리사 2급), 자격 검정 과정을 통해 상담심리에 관한 이해, 인간의 전생애적 발달과정에 관한 이해, 이상심리에 관한 이해, 인간의 학습 과정에 관한 이해, 심리검사의 시행 및 해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고 되어있어 이를 통해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갖춰야 할 심리상담 역량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이에 대한 개인의 역량에 따라 개인이 습득하는 학습의 질과 양에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시험 및 수련내용 평가를 통해 수련생의 심리상담 수행을 위한 기본적 역량을 충분히 평가하고, 수련생의 역량을 스크리닝하는 과정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취득 과정

에 해당 영역의 지식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필기시험이 포함된 자격 검정 과정이 운영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자격갱신과 보수교육에 대해서 비교하였다. 법제화가 이뤄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리상담 관련 자격은 자격을 갖춘 이들만이 해당 업을 할 수 있는 면허 제도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수교육과 자격의 갱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자격에 대한 갱신 기간을 가지며 해당 기간 내 심리상담 관련 활동 혹은 보수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자격이 박탈 혹은 중지되는 엄격함을 가진다. 국내 자격의 경우 법적인 면허의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자격증을 발급하는 학회 혹은 기관마다 해당 자격증 관리를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공인 자격증을 운영하는 해외 국가들만큼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학회 회원 자격과 자격증 회원이 분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자격증의 보수교육 이행을 통한 자격갱신과 학회 회원 자격 유지의 기능이 공존한다. 교육 운영 방식도 유자격증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운영 방식이 아닌 학회 내 학술 행사 및 연수 등의 방식으로 공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회원 자격과 자격증 회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만약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당해연도 자격은 정지되지만 차기 년에도 관련 활동을 통해 자격의 회복이 가능하며, 자격 정지 기간에도 상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의 한계를 가진다. 심리상담전문가라는 직업은 다른 어떤 직무보다 자기 성찰, 윤리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 활동을 통해 심리상담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

리서비스 입법연구에서 심리상담 자격 제도 내 자격증 취득 이후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한국심리학회, 2020) 이 역시 심리상담의 특성상 사례경험, 사례지도와 전문성 확장을 위한 교육 등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자격증 발급기관의 경우 회원 유지 조건 등의 확인을 위해 갱신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제화된 다른 국가의 경우 직무 관리의 관점에서 각각 2년, 3년, 6년 등 자격갱신 기간의 차이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매년 자격의 갱신은 자격증을 관리하는 협회 업무와 이를 준비하는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의 직업 활동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교육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자격의 경우 발급기관에서 1년에 2~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해외 법제화 국가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년에 36시간, 호주는 1년에 80시간 등 국가별 상황에 따라 교육 시간에 차이는 있지만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못지않게 비중 있게 갱신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제화된 국가들은 수퍼바이저와 수련기관의 자격 요건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심리학회(APA) 인증을 받은 수련기관이 인증을 갱신하려면 최초 인증 결과(3, 5, 10년)의 인증 기간 이후 CoA 포털에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고 현장 방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부분 주에서 수퍼바이저는 2년마다 지속적인 교육(Continuing Education [CE])을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위원회 승인 수퍼바이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보수교육을 완료해야 하고 2년마다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ontinual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을 진행해야 한

다. 따라서 한국의 상담 시장과 심리상담 전문인력의 심리상담 수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지금보다 더 비중 있게 보수교육 내용 및 의무 교육 시간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 전문인력의 성장을 돕는 지속적인 보수교육, 심리상담 활동 수행 내용 등을 바탕으로 3년 정도의 기간마다 자격갱신이 이뤄지도록 하여 심리상담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이 역시도 자격증을 관리하는 협회와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보수를 위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회로 분리 운영하여 역할의 중복에서 오는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 자격취득 기준에 대한 제언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의 학위는 인증된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교육 과정 내에서 이뤄지는 수련 외에 수련프로그램을 인증받은 외부 수련 기관에서 1년(2,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조건이 갖춰지면 교육 및 수련 과정에 대한 자격 검정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이후 3년에 30시간 이상의 자격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심리상담 전문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법제화가 이뤄진 6개 국가(미국, 호주, 유럽, 영국, 대만, 일본)의 심리상담 관련 자격과 국내 국가 자격 및 민간 자격에 대해 학위, 수련시간 및 내용, 자격 검정, 자격 갱신 및 보수교육의 주요 영역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국내 심리상담 자격의 전문성 획득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물론 해외의 심리상담 자격의 법제화 배경과 국내 심리상담 자격 운영 상황은 차이가 있으므로(신윤정, 이지연, 2021) 해외 자격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국내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특정 학과, 전공, 학회 중심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들로 현재 국내 심리상담 자격의 법제화 과정이 험난한 만큼, 상담사의 주요 직무 중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과 체계적인 수련체계 확립은 법제화 국가들의 사례에서 본받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리상담전문가의 자격 관련 법제화에 앞서 무엇보다 해당 자격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위해서는 심리상담전문가의 수행 업무의 영역과 범위에 대한 정의와 업무 분석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심리상담 관련 학회 및 유관 단체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영역 및 입장을 내려놓고 국민의 정신 건강을 조력할 수 있는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해당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 및 수련 내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과 기존 논문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에 따른 심리상담 역량에 기반하여 수행 업무를 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다(김영근 등, 2023; 나고은 등, 2021). 그러나 NCS 체계 내 심리상담의 분류 범주가 사회복지/종교 영역인 부분, 청소년상담과 직업상담 등으로 나뉘어 제시되는 부분, 수행 업무와 필요 역량 등이 혼재되어 정리되어있는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NCS 내 역량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심리상담 영역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합의된 역량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 교육 과정, 수련 내용, 평가의 영역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

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심리상담 관련 학회 및 유관 단체들이 심리상담 고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심리상담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이바지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심리상담사법안-비용추계서”, (2022. 05. 06.) [임기만료폐기]
- 김민철 의원 외 9인,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2124540, (2023. 09. 18.) [임기만료폐기]
- 김수임, 최나연, 정문주 (2021). 국내 심리상담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제언: 미국과 일본의 사례 검토. *상담학연구*, 22(5), 11-21.
- 김영근, 라수현, 최동현, 박철형 (2023).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고찰. *상담학연구*, 24(4), 1-30.
<https://doi.org/10.15703/kjc.24.4.202308.1>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http://doi.org/10.23844/kjcp.2018.08.30.3.475>
- 김인규, 손요한 (2020). 현행 법률 상의 전문상담 인프라 분석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8(1), 69-77.
<http://dx.doi.org/10.55063/KIYFE.2020.18.1.7>
- 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상담학연구*, 14(3), 1569-1585.
- 김인규, 장숙희 (2019). 국내 상담관련 민간 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교육종합연구*, 17(2), 43-61.
<https://doi.org/10.31352/JER.17.2.43>
- 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미국의 전문상담사(LPC)와 인증프로그램(CACREP)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15.
- 노은빈, 김현진, 최기홍 (2022). 국제 수준의 심리사 자격 기준, 핵심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제화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3), 243-255.
<https://doi.org/10.22257/kjp.2022.8.41.3.243>
- 보건복지부 (2022).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http://kstss.kr/?p=2772>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1).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01&page=1&CONT_SEQ=369296&PAR_CONTENT_SEQ=369295
- 서정숙 의원 외 10인, “심리사법안”, 2115453, (2022. 04. 29.) [임기만료폐기]
- 신윤정, 이지연 (2021). 심리상담서비스 국가 자격 관리 방안 제언: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4), 39-49.
<https://doi.org/10.15703/kjc.22.4.202108.39>
- 심상정 의원 외 9인, “상담사법안”, 2116456, (2022. 07. 14.) [임기만료폐기]
- 안성희, 성현모, 김보람, 이상민 (2022). 실무실습, 실무수련, 실무교육, 실무경력: 심리상담사의 실무능력배양의 방향성. *상담학연구*, 23(3), 39-49.
<https://doi.org/10.15703/kjc.23.3.202206.39>
- 안수정, 안하얀, 서영석 (2021).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1), 113-158.

- 양난미, 하재필, 성현모, 이상민 (2023). 심리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한 인식조사: 상담심리사와 일반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4), 1595-1619.
<http://dx.doi.org/10.23844/kjcp.2023.11.35.4.1595>
- 윤동욱, 안수정, 성현모 (2020). 심리상담사법 제정 입법을 위한 기초연구. *법률사무소서회*.
- 윤소라, 장진경 (2021). 가족 상담 민간자격증 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 *인문사회21*, 12(2), 913-926.
<http://dx.doi.org/10.22143/HSS21.12.2.64>
- 이개호 외 12인,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법안”, 2204118, (2024. 9. 20.)
- 이상민 (2020).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547-557.
- 전봉민 의원 외 9인,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2115039, (2022. 03. 31). [임기만료폐기]
- 최종윤 의원 외 9인, “심리상담사법안”, 2114984, (2022. 03. 28.) [임기만료폐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심리서비스 활성화 위한 제도 정립 연구.
- 한국심리학회 (2020).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 홍은택, 김현진, 박수현, 최기홍 (2023). 국내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 현황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9(3), 481-505.
- AHPRA (2021). *Retirement of the 4+2 internship program*.
<https://www.psychologyboard.gov.au/Registration/Provisional/Retirement-of-4-2-internship.aspx>
- Kim, H. S., Yoon, S., Son, G., Hong, E., Clinton, A., Grus, C., Murphy, D., Siegel, A., Karayianni, E., Ezenwa, M., Zara, G., Gutiérrez, G., Balva, D., Chey, J., & Choi, K. (2022). Regulations governing psychologists: An international surve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53(6), 541-552.
<https://doi.org/10.1037/pro0000470>
- Suzuki, H. (2022). *Legislation and regulations of professional psychology licensure in Japan*. 2022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ternational Forum.

원 고 접 수 일 : 2024. 01. 16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6. 21
게 재 결 정 일 : 2024. 07. 15

**Proposed Criteria for Acquiring Qualification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Professionals:
A Comparison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Qualification Systems**

Boyoung Son	Jeesuk Lim	Sangeun Baek
Sunmoon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instructor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experts in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due to varying standards and evaluation methods in the training process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depending on the certificate issuing institution. Consequently,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is challenging. This study investigated degree requirements, training periods and requirements, qualification examinations, and qualification renewal and maintenance education for over foreign national qualifications (U.S., Australia, Europe, U.K., Japan, and Taiwan), domestic national qualifications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and youth counselor), and domestic private qualifications recognized by associations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Korean Clinical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and Korean Association of Play Therapy). As a prerequisite for this, the study suggested standardization through curriculum certification, systematization of the training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the maintenance education and qualification renewal system to improve professionalism.

Key words :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Legalization, Foreign Psychological Counsel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Korean Psychological Counsel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부록 1. 해외 주요국가별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의 자격시험 과목

국가	자격	자격시험 과목
미국	심리사	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Psychology(EPPP) - PART 1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의 생물학적 기전(Biological bases of behavior) • 행동의 인지-정서적 기전(Cognitive-affective bases of behavior) • 행동의 사회적·다문화적 기전(Social and multicultural bases of behavior) • 성장과 발달(Growth and lifespan development) • 평가와 진단(Assessment and diagnosis) • 치료, 개입 및 예방(Treatment, intervention and prevention) • 연구 방법 및 통계(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s) • 윤리적, 법적 및 전문성 이슈(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issues)
		Examination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Psychology(EPPP) - PART 2 Ski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지향성(Scientific orientation) • 평가와 개입(Assessment and intervention) • 관계적 역량(Relational competence) • 전문직의 정체성(Professionalism) • 윤리적 실무(Ethical practice) • 협력, 자문, 수퍼비전(Collaboration, consultation, and supervision)
	상담사	National Clinical Mental Health Counseling Exam(NCMH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과 윤리(Professional practice and ethics) • 접수, 평가 및 진단(Intake, assessment, and diagnosis) • 치료 계획 수립(Treatment planning) • 상담 기법과 개입(Counseling skills and intervention) • 중요한 상담자 요인(Core counseling attributes)
호주	심리사	National Psychology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Ethics) • 평가(Assessment) • 개입(Intervention) • 의사소통(Communication)
대만	심리사	전문직업 및 기술인 고등시험 - 심리사 시험 (한자: 專門職業及技術人員高等考試心理師考試) (영어: Professional and Technical Senior Examination for Psycholog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심리학의 기초 •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 상담 및 심리치료 실무와 직업 윤리 • 정신건강 및 이상심리학 • 심리평가 • 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일본	심리사	공인심리사 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심리사의 직무 • 심리학 개론 • 임상심리학 개론 • 심리학 연구법 • 심리학 통계법 • 심리학 실험 • 지각·인식 심리학 • 학습·언어 심리학 • 감정·인격 심리학 • 신경·생리 심리학 • 사회·집단·가족 심리학 • 발달심리학 • 장애인·장애아 심리학 • 심리적 평가 • 심리학적 지원법 • 건강·의료 심리학 • 복지 심리학 • 교육·학교 심리학 • 사법·범죄 심리학 • 산업·조직 심리학 • 인체의 구조와 기능 및 질병 • 정신질환과 그 치료 • 관계 행정론 • 심리연습 • 심리실습
		• 대학원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의료 분야에 관한 이론과 지원의 전개 • 복지 분야에 관한 이론과 지원의 전개 • 교육 분야에 관한 이론과 지원의 전개 • 사법 및 범죄 분야에 관한 이론과 지원의 전개 • 산업 및 노동 분야에 관한 이론과 지원의 전개 • 심리적 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제 • 심리 지원에 관한 이론과 실제 • 가족 관계, 집단, 지역사회에서 심리 지원에 관한 이론과 실제 • 정신건강 교육에 관한 이론과 실제 • 심리실습

주. 미국 심리사의 자격시험, EPPP는 제1부(지식)와 제2부(기술)로 구성되어 있음. EPPP 제1부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진행되지만, 제2부는 제2부 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주에서만 시험을 진행함. 또한, 미국의 각 주는 EPPP와 함께, 법 혹은 윤리 시험도 진행함.

주. 호주 심리사의 자격시험은 학부 4년 졸업 후 1년 과정의 석사과정을 수료한 수련생들이 일반심리학자 자격 취득을 위해 치르는 국가 자격시험임.

부록 2. 국내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필기시험 과목

자격	필기시험 과목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3급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2급 청소년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 담·학업상담 중 2과목	1급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 연구방법론의 실제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 담·위기상담 중 2과목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상담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심리검사	1급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및 가족치료 심리진단 및 평가 성격심리 및 정신병리 심리통계 및 연구방법론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7과목 중 6과목 선택) 상담 이론과 실제 심리검사와 상담 집단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윤리 상담연구방법론 진로상담 가족상담	1급 상담철학과 윤리 고급상담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심리평가와 진단 고급 상담연구방법론 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성격 심리학 인지 및 학습 심리학 생리 심리학 임상심리학 연구방법론 정신병리학 심리평가 심리치료		
한국기독교 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3급 기독교상담 정신병리(이상심리) 발달심리 정신역동	2급 기독교상담 정신병리(이상심리) 발달심리 정신역동 가족치료 집단상담	1급 기독교(목회)상담 연구방법 기독교(목회)상담과 영성 상담자훈련 및 상담윤리 종교적 경험과 심리 중독과 영성 or 분석심리학과 표현예술치료 중 1 과목	
한국놀이치료학회 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심리상담 아동발달	1급 놀이심리상담이론 I 상담이론	전문가 놀이심리상담이론 II 놀이심리상담 방법 및 기술 놀이심리상담의 적용 연구방법론	교육전문가 놀이심리상담 방법 및 기술 놀이심리상담의 적용